공 개

의안번호	제 150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5. 20. (제 10 차)

의결사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20.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거래소 코스닥시장 및 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장경보제도 관련 규제 합리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위탁증거금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경보 관련 위탁증거금 징수의무 면제(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안 제89조 제5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안 제42조제9항,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안 제61조제9항)

○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현금) 100% 징수 의무 면제

4. 참고사항

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1>

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2>

다.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3>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3>

<별지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5항 본문 중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유의종목”을 “투자유의종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① ~ ④ (생 략) ⑤ 회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유의종목 또는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금액 전부(현금에 한한다)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매도대금(위탁자가 회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9조(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투자유의종목----------.

<별지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9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첨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위탁증거금) ① ~ ⑧ (생 략) ⑨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에 대하여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대금 전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금에 한한다)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매도대금(위탁자가 회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생 략)	제42조(위탁증거금)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삭 제> ⑩ (현행과 같음)

<별지3>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9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첨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위탁증거금) ① ~ ⑧ (생 략) ⑨ 회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에 대하여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대금 전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에 한한다)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매도대금(위탁자가 회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생 략)	제61조(위탁증거금)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삭 제>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50